#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6

발의연월일: 2020. 7. 8.

발 의 자: 박성중・홍문표・송석준

박덕흠 • 이명수 • 태영호

서일준 • 박대출 • 유경준

백종헌 • 홍준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대상 주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 연금의 혜택을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인한 것임.

그러나 경제활동을 은퇴한 노후세대는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 히 최근 몇 년 간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은퇴자들이 주 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보유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 한도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 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함(안 제43조의11).

법률 제 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1의 제목 중 "노인복지주택"을 "고가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 및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으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가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보증한도 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고가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3조의11(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제43조의11(고가주택 및 노인복 특례) 제2조제8호의2·제9조제4 지주택에 대한 특례) ① -----항·제43조의2·제43조의4·제43조 의5·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은 「노인복지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 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 호에 따른 고가주택 및 「노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 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가 <신 설> 주택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 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보증한 도 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소 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 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고 가주택의 가격으로 본다.